

## 한-미 FTA로 “중국산 신발 비켜~!”

### 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U사는 신발을 생산하여 중국, 일본,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업체로서, 종업원수 11명, 수출금액 297천불('11년 기준)임
- 제품소개 : 신발(HS 제64류)
  - 수출물품인 신발은 갑피를 포함한 부분품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며, 중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에 비하여 다소 고가의 물품

### 2. 장애 요소

- 한-미 FTA 발효 전까지 미국으로 소량 수출되고 있었으며, 미국 바이어가 동 업체의 신발에 대하여 관심은 있었으나 **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서(20%정도)** 계약 성사에 어려움 발생
- 중국, 베트남 등 해외 저가 신발 제조국들과의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,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-미 FTA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정

### 3. 극복 방안

- 정부기관,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활용
  - 한-미 FTA 발효 전부터 CEO가 큰 관심을 갖고 부산세관 “한-미 FTA 1:1 맞춤형 컨설팅”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“FTA 닥터 컨설팅 사업” 등 정부기관 및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활용하여 한-미 FTA 활용 기반 마련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“FTA 닥터 컨설팅” 신청('11년 12월)
- 부산세관 “한-미 FTA 1:1 맞춤형 컨설팅” 제공('12년 4월)
- 관세청 주관 “중소기업 컨설팅 사업” 신청('12년 6월)

- FTA-PASS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
  - 원산지 관리시스템(FTA-PASS)을 사용하여 수출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하고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
- 한-미 FTA 신발 원산지결정기준 완벽 충족
  - 신발에 사용되는 갑피가 모두 한국산(국내에서 갑피 제조)이므로 민감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
    - ※ 한-미 FTA에서 신발은 17개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,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갑피가 국내에서 제조되어야 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
  - 갑피제작 및 신발 주요 생산 공정을 국내에서 모두 수행

#### 4. 활용 효과

- 모델별로 4.3~10%의 관세철폐로 對미 수출 58% 증가
- 한-미 FTA를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, 한-EU FTA를 활용하여 프랑스 수출을 확대하고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

#### 5. 시사점

-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신발보다 20%정도 높은 가격으로 인한 미국 진출의 어려움을, 한-미 FTA의 체계적인 준비와 완벽한 원산지 증명능력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인 고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하여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모범사례
- 한-미 FTA로 약 10%의 제세(관세 및 물품취급수수료 등) 절감혜택을 美바이어에 제시하여 신규 수출계약 체결